

<p>② 이 협약 및 은행과 협력기업 간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구매기업의 채권명세통보가 있는 때에 은행은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일정한 조건으로 매입하며, 해당 매입대금은 원칙적으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은행은 협력기업이 결제일 전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without recourse)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이하 "외상채권대출"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지급할 수 있고, 협력기업이 하위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상생벤더구매론의 지급승인을 위한 지급승인명세를 전송할 경우 하위 협력기업 앞으로 지급승인(이하 상생벤더구매론의 개별대출이 실행된 경우 및 지급승인으로 은행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생벤더구매론"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p> <p>③ 은행은 외상채권대출 및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된 경우에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일에 구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당일 만기 대출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한 외상채권대출 및 상생벤더구매론을 상환처리하고,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으로 당일 만기 대출을 상환처리합니다.</p> <p>④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은행과 협력기업간 체결한 별도 약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매입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협력기업에게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환매합니다.</p>	<p>② 이 협약 및 은행과 협력기업 간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구매기업의 채권명세통보가 있는 때에 은행은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일정한 조건으로 매입하며, 해당 매입대금은 원칙적으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은행은 협력기업이 만기일 전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without recourse)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이하 "외상채권대출"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지급할 수 있고, 협력기업이 하위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상생벤더구매론의 지급승인을 위한 지급승인명세를 전송할 경우 하위 협력기업 앞으로 지급승인(이하 상생벤더구매론의 개별대출이 실행된 경우 및 지급승인으로 은행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생벤더구매론"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p> <p>③ 은행은 외상채권대출 및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된 경우에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당일 만기 대출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한 외상채권대출 및 상생벤더구매론을 상환처리하고,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으로 당일 만기 대출을 상환처리합니다.</p> <p>④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만기일까지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은행과 협력기업간 체결한 별도 약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매입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협력기업에게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환매합니다.</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제 4 조(기본 협약사항)</p> <p>①(기재생략)</p> <p>②(외상매출채권의 양도)</p> <p>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p> <p>(신설)</p>	<p>제 4 조(기본 협약사항)</p> <p>①(현행과 같음)</p> <p>②(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p> <p>1.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p> <p>2.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p>	<p>용어 수정</p> <p>호 번호 신설</p> <p>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을 위한 호 신설</p>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2. 만기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인출하여 외상채권대출 및 상생벤더구매론 취급분을 우선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3.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4.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호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협력기업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5. 협력기업의 외상채권대출 신청 또는 상생벤더구매론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받은 채권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제 2 호의 방법으로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신설)

⑨(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

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을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2.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만기일이 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외상채권대출과 상생벤더구매론 취급 분을 우선 변제하고,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4. 협력기업의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더구매론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 받은 채권대금을 그 만기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제 3 호의 방법으로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5.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호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3 호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6.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제 3 호에서 정한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잔액보다 금액이 적은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⑨(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

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을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용어 수정
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
상동
상동
상동
항 추가 및 상동
용어 수정

⑩(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

제 3 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통지를 받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 8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⑪(외상매출채권의 환매)

1. 은행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협력기업에게 환매하기로 합니다.

가. 구매기업이 **지급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기재생략)

다. 은행이 **지급기일** 전이라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협력기업이 환매하기로 합니다.

2. (기재생략)

⑫ (기재생략)

제 5 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매출채권(팩토링)거래 중 채권발행한도**, 외상채권대출 및 상생벤더구매론(이하 제 5 조 및 제 6 조에서 "대출"이라 합니다)의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에 "✓" 표시 및 관련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금	원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금	원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

⑩(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

제 3 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가)압류**의 통지를 받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 8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⑪(외상매출채권의 환매)

1. 은행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협력기업에게 환매하기로 합니다.

가.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기재생략)

다. 은행이 **만기일** 전이라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협력기업이 환매하기로 합니다.

2. (기재생략)

⑫ (현행과 같음)

제 5 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외상채권대출 및 상생벤더구매론(이하 제 5 조 및 제 6 조에서 "대출"이라 합니다)의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에 "✓" 표시 및 관련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금	원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금	원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input type="checkbox"/> 가산금리()%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용어 일부 삭제

	□변동금리	□기준금리() + ()%						
		□기준금리() + 기간별가산금리						
		1~1 5 일	16~4 5 일	46~7 5 일	76~10 5 일	106~ 195 일	196~ 285 일	286 이상
		() %	() %	() %	() %	() %	() %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 년을 365 일(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변 제 방 법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재생략)

③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 **만기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 외상채권대출(이하 "당일만기대출"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

④(기재생략)

(신설)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를 더하여 결정하며, 최고 연()%로 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 년을 365 일(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변 제 방 법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행과 같음)

③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 외상채권대출(이하 "당일만기대출"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

④(현행과 같음)

⑤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가)압류 통지를 받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자율 적용 기준 반영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수정

문구 수정

업무절차에 따른
항 신설

제 6 조 (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

①~② (기재생략)

③은행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은행영업일에 대출 취급하기로 합니다.

④(기재생략)

제 7 조 (한도 감액, 정지)

① (기재생략)

1~2. (기재생략)

3.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 11 조에** 의하여 거래 제한될 때

② (기재생략)

제 8 조 (협약서 효력)

①~② (기재생략)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결제일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기재생략)

제 9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영업본부 또는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 (기재생략)

20 년 월 일

(은행) _____ (구매기업)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인) 기업명 : _____(인)

제 6 조 (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은행의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은행영업일에 대출 취급하기로 합니다.

④(현행과 같음)

제 7 조 (한도 감액, 정지)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 11 조의 2 에** 의하여 거래 제한될 때

② (현행과 같음)

제 8 조 (협약서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현행과 같음)

제 9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 (현행과 같음)

20 년 월 일

(은행) _____ (구매기업)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인) 기업명 : _____(인)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
구 수정

문구 수정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	------	------	--

2. 개정 시행일 : 2019년 5월 30일

3.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적용